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 월 11 일

여 수 시 장 정기연 인

여수시 조례 제1939호

붙임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39호

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,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숲길의 휴식기간제 등)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, 면적,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숲길 등의 협의매수)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9조(숲길의 휴식기간제 등)**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, 면적,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제9조(금지행위)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	**제10조(금지행위)** ---------- ---------- ---.
1. (생 략) <신 설> 2. ~ 5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제10조 (생 략)	**제11조**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〈신 설〉	**제12조(숲길 등의 협의매수)**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제11조 · 제12조 (생 략)	**제13조 · 제14조**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